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하되,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·군·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제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3.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,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·군·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9조(지원) ①구청장은 자해·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3.그 밖에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 입원으로 인한 치료 비용 <u>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은 보건복지부 「정신건강사업안내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</u></p>	<p>제9조(지원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 3.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 <u><삭 제></u></p>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망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3. “정신건강증진시설”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.
4. “응급정신질환자”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·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.

5. “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”란 정신질환,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·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,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1.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
2.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
3.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소관

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구의회
2. 광진경찰서
3. 광진소방서
4. 구 정신건강복지센터
5. 정신건강증진시설
6. 그 밖에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6조(사업 추진)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·육성 사업
2.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3.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
4.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) ① 구청장은 자해·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,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·군·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자해·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
2. 심리평가, 개인상담,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
3.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

구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: 자치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따른 병상 운영비
2. 비용추계의 전제
 - 타 자치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소요예산: 평균 연 1억원, 1일당 27만원(1병상)
 -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 운영으로 연간 병상 운영비 비용추계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국고보조금	49,275	49,275	49,275	49,275	49,275	246,375
	소계(a)	49,275	49,275	49,275	49,275	49,275	246,375
세출	의료 및 회복비	98,550	98,550	98,550	98,550	98,550	492,750
	소계(b)	98,550	98,550	98,550	98,550	98,550	492,750

4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의료 및 회복비(병상 운영비): 270,000원(1일당)*365일(1년)=98,550,000원

5. 재원조달 방안: 국비 50%, 구비 50%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국 비		49,275	49,275	49,275	49,275	49,275	246,375
시 비		-	-	-	-	-	-
구 비		49,275	49,275	49,275	49,275	49,275	246,375
민 간		-	-	-	-	-	-
기타(지방채, 기금, 예치금 회수 등)		-	-	-	-	-	-
합 계		98,550	98,550	98,550	98,550	98,550	492,750

6. 작성자: 보건소 건강관리과 양희경 (02-450-1934)

법규명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	<p>제50조(응급입원)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.</p> <p>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(공휴일은 제외한다)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.</p> <p>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·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